

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0일 이내 그 밖의 건축물 60일 이내		
신청인	성명(법인명)	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			대표자 성명		
	실무 책임자	성명	부서	직	위	
		전화번호	F A X	전자우편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		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		
	주소			(전화번호 :)		
설계자	사무소명			신고번호		
	성명			자격번호		
	사무소주소			(전화번호 :)		
신청 건축물	건축물명			착공예정일		
	소재지 주소			준공예정일		
	건축물의 주된 용도	[] 주거용 건축물(주용도: , 총전용면적 임대: m ² , 분양: m ²) [] 주거용 외의 건축물(주용도: , 연면적: m ² , 층수: 층)				
	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	용량 () [대지 내 (), 대지 외 ()] 건축물 대지 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가 있는 경우 해당 주소:				

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7조제3항 및 「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

(서명 또는 인)

(또는 대리인)

(전화번호:)

신청서 접수기관

(접수부서명 및 접수자인)

인증기관의 장

귀하

첨부서류	1. 건축·기계·전기·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(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합니다) 관련 설계도면 2.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3. 건물 전개도 4. 장비용량 계산서 5. 조명밀도 계산서 6. 관련 자재·기기·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.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(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말합니다)의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	<인증 수수료> 별표 2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금액
------	---	---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



접수



검토



결재



인증서 발급

신청인

인증기관
(인증처리 부서)

인증기관
(인증처리 부서)

인증기관
(인증처리 부서)